

[별표 3] <개정 2017. 12. 29.>

자동차의 종류(제4조 관련)

1.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종 류	정 의	규 모
경 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승용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 미만
중량자동차	주로 많은 사람 및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총중량 3톤 이상
이륜자동차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중량 0.5톤 미만

- 참고: 1. 승용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에서 생겨난 왜건(WAGON) 등을 포함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에는 지프(JEEP)·코우치(COACH) 및 밴(VAN) 등을 포함한다.
 3. 중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경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 총중량에 따르되, 차량 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2. 2000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승용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승용1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9인승 이하
		승용2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승용3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

			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승용4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 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게 제작된 것	화물1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화물2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 톤 이하
		화물3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이륜자동차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 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중 량 0.5톤 미만

- 참고: 1. 승용자동차에는 지프(JEEP)·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빈 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 총중량에 의하되, 차량 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3. 2006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 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1,000cc 미만	
승 용 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및 9인승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 량 2톤 이하
		중대형	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 량 2톤 초과 3.5톤 이하

		대형	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대형	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이륜자동차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u>빈 차</u> 중량 0.5톤 미만

- 참고: 1. 승용자동차에는 지프(JEEP)·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 및 이륜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최고속도 50km/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빈 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총중량에 의하되,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4. 2015년 12월 8일 이후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9인승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하이며,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중대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이며,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대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초과이며,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
		대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초과
이륜자동차	자전거로부터 진화 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 을 운송하기 위한 것	엔진배기량이 50cc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1 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비고

1. 승용차에는 지프(JEEP), 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최고속도 50km/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총중량에 따르되,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